

실기시험만 시행할 수 있는 종목(제9조제2항 관련)

직무분야	중직무분야	자격종목
02.경영·회계 ·사무	023.사무	한글속기 1급·2급·3급
14.건설	141.건축	거푸집기능사, 건축도장기능사, 건축목공기능사, 도배기능사, 미장기능사, 방수기능사, 비계기능사, 온수온돌기능사, 유리시공기능사, 조적기능사, 철근기능사, 타일기능사, 금속재창 호기능사
	142.토목	도화기능사, 석공기능사, 지도제작기능사, 항공사진기능사